

# 분할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 연금대학원  
심 현 정

- 
- I. 도입
  - II. 분할연금이 도입된 이유
  - III.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 IV. 분할연금 논의의 전개 및 방향
  - V. 결론

# 이혼과 함께 남겨진 삶의 현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이혼율은 아시아 1위  
그 중 20년 이상 함께한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점점 증가  
1995년 8.1%에서 -> 2012년 26.4%로 황혼 이혼률 증가  
황혼이혼은 어린 자녀가 없는 이유로  
양육권이나 친권의 문제보다  
재산분할, 위자료가 문제

이때 잘 알아둬야 할 내용은 바로 **분할 연금제도**.

# 분할 연금이란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 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직장을 갖지 않은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 한 점을 인정.

노후 소득 보장을 확보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에 도입.

# 분할연금 수급 요건

분할연금 신청 조건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제도 가입기간 중

1.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
2.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3. 본인도 수급 연령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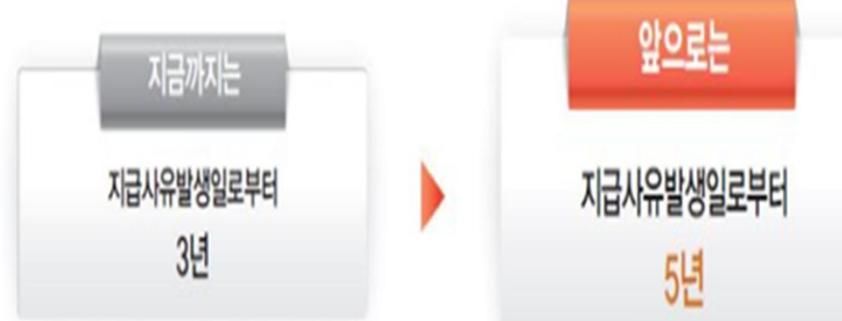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하게 됨으로 주의가 필요.

# 분할연금 선 청구권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분할 청구하기 위해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을 보완  
자칫하다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법이 개정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

## 1. 분할연금 청구기한연장 (2016.11.30.시행)

분할 연금 선 청구제도 시행



# 연금 분할 방식

연금 분할 방식은 계속 바뀌어 옴

1. 처음엔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연금을 반씩 나눠 가짐
2. 혼인기간 동안 기여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2016.11.30 이후부터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3. 헌법 재판소는 이후 별거나 가출기간을 혼인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 재산분배' 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반영해 올해 6월 20일부터는 실종과 거주불명 기간을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이혼 당사자가 합의나 법원 판결을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빼고 분할 연금액을 산정한다.

# 분할연금제도 개선

지난 11월 14일 이혼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 연금법’개정안을 발의  
국민 연금 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연금 분할 수급자는  
2004년-342명  
2017년 -2만 5302명  
2018년(7월 기준)  
-2만 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만 4286명이 여성으로 나타남



# 국민 연금 제도 개선안은

- 국회제출
- 입법과정을 거쳐
- 법률로 의결
- 최종완성으로 결정된다.

국민 연금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현실에 맞춰가는 제도이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최저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10만 6032건)의  
22.4%(2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음

현재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 연금 수급권을 인정  
하는 것은 불합리한 지적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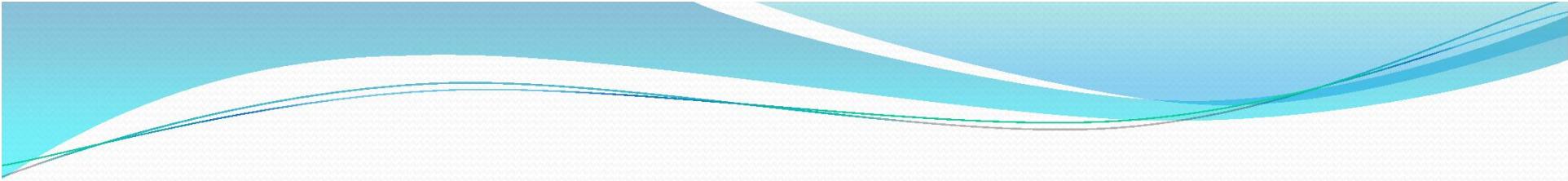
# 분할연금제도 개선으로 달라지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 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즉시'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

1. 분할 방식을 기존 노령 연금 수급 시점에서 급여 분할하던 것을 이혼시점에 분할하는 것으로 변경. 이혼하는 시점에 가입이력을 나눠 본인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3. 부부가 헤어졌을 때 국민 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
4.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

## 이혼시 분할연금, '가입기간' 분할제도 도입으로 선택권 제공해야





# 국민연금 분할연금 개정에 대한 오해

- ◎ 혼인기간은 1년인데 이혼하면 내가 평생 낸 연금을 나눠서 받는다?
  - ☞ 아니다.  
혼인한 1년에 해당하는 가입이력(소득)을 나눠 받는다.
- ◎ 부부모두 신청 할 수 있어야 공평하지 않을까?
  - ☞ 분할 연금은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 모두 신청 가능

#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임의가입 월 보험료 올해 기준 최저 9만원부터  
최고 40만 410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  
현재 나이 40세 전업주부가 월 보험료 매달 9만원 씩 20년간  
총 2160만원을 납부한다 가정  
→ 만 65세부터 연금으로 33만 8290원 평생 받을 수 있음



# 결론

국민연금이 도입 된지 30년이 지났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 경제환경과 국민들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제도는 꾸준히 손질되어져 왔고  
그 중 제도 변화가 가장 잘았던 것을 꼽으라면 분할연금을 들 수 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기 어려운 만큼  
재산분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균 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남은 인생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분할 연금제도는  
소홀히 하면 안될 것 같다.



(Thank You!)